

『2014년 러시아 뷰티용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14년 러시아 뷰티용품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14년 러시아 뷰티용품 시장개척단
- 나. 파견기간 : 2014. 05. 26(월) ~ 05. 31(토) < 6일간 >
- 다. 파견지역 :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라. 상담품목 : 뷰티용품
- 바.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가. 모집규모 : 10개사
-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2년 수출 금액 2,000만불 이하
-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 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

4. 신청기간 : 공고일 ~ 1월 24일(금) 24: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경기도 수출지원홈페이지(<http://trad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② 로그인 ⇒ (상단) 온라인신청 ⇒ 기업정보 확인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 ③ 온라인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러시아 미용용품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선택 ⇒ 사업참여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사업신청
-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⑤ 온라인 신청완료 후 담당자 이메일(jihosong35@gsbc.or.kr)로 영문/현지어 카탈로그 송부(필수)

※ 공장정보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이메일<leo667@gg.go.kr>로 송부 후 등재요청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온라인신청→기업정보 확인→인증정보에서 항목 선택 후 등록)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등록)
- ② 공장등록증 사본
-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4년 2월 18일(화)

나. 경기도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메일)

7. 추진일정 [안]

-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4년 1월 29일 ~ 2월 14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4년 2월 18일
다. 사전 마케팅 : 2014년 2월 19일 ~ 5월 23일
라. 사전간담회 : 2014년 5월 20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4년 5월 26일(월) ~ 5월 31일(토)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라.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송지호 사원, 031-259 -6136, jihosong35@gsb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9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 경기도지사

2014년 통상촉진단 파견기업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계			100
기업기본 (39)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10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6
	해외 규격인증 획득 ¹⁾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4
	국내특허 취득 ²⁾	특허 2점 / 건	4
	공공인증서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e-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4),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3)	15
수혜실적 (5)	2014년 통상시책 수혜여부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1)	5
시장성 (5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1등급(50), 2등급(45), 3등급(40), 4등급(35), 5등급(30), 6등급(25), 7등급(20), 8등급(15), 9등급(10), 10등급(5)	50
수출실적 (6)	전년도(2012년) 수출금액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4), 1,000만불 이상 ~ 2,000만불 이하(2), 2,000만불 초과(탈락)	6
참가제한	2014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공동관 참가, FTA활용,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 중 총 6회 초과		탈락
	당해 연도 통상촉진단 3회 초과		
	201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93개(별첨 #1)
2) 특허권자가 참가신청 기업의 소유만 인정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93개 분야 >

- | | | |
|-------------------------|-----------------------------------|---------------------------|
| 1. AAR(미국철도협회) | 2. ABS(미국선급협회) |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 4. AENOR(스페인규격협회) | 5. AGA(미국가스협회) | 6. ANSI(미국규격협회) |
| 7. API(미국석유회) | 8. AS(호주규격협회) | 9. ASME(미국기계학회) |
| 1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12. BABT(영국전기통신기기승인위원회) |
| 13. BSI(영국표준협회) | 14. BSMI(표준검험국) | 15. BV(프랑스선급협회) |
| 16. CCC(중국필수인증) | 17. CE(유럽공동체마크) | 18.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 19. CGA(미국압축가스협회) | 20. CMJ(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 21. CNS(대만국가표준) |
| 22. CSA(캐나다표준규격) | 23.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24.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 25.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26. DIN(독일규격협회) | 27.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 28. DOT(미국운수성) | 29. DVGW(독일가스및수질기술자협회) | 30. Eco-Labeling(EU 환경마크) |
| 31. ELOT(그리스규격협회) | 32.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3. EZU(체코전기안전협회) |
| 34.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35.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36.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37. GL(독일선급협회) | 38. GOST(러시아표준규격) | 39. GS(독일품질안전) |
| 40. GTT(프랑스 GTT 선급) | 41. HK-STC(홍콩품질및검정센터) | 42.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
| 43. IC(캐나다산업성) | 44. ICSA(미국정보보호제품인증) | 45. IECC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 4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47.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48.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49.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0. JIS(일본표준규격) | 5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52. LCIE(프랑스전자공업중앙연구소) | 53. LR(영국선급협회) | 54. MEEI(헝가리전기제품시험인증원) |
| 55. NAL(중국통신인증) | 56.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57. NF(프랑스규격협회) |
| 58. NGV(미국천연가스차량협회) | 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60. NK(일본선급협회) |
| 61. NPC(미국위생도기규격) | 62.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³⁾ | 63.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 64. OVE(오스트리아전기기술자협회) | 65. PCBC(폴란드안전규격협회) | 66.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
| 67.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68.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 69. QAS(호주품질보증협회) |
| 70. RAL(독일품질보증인증기구) | 7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72. RS(러시아선급협회) |
| 73.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74. SABS(남아연방규격협회) | 75.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76.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 77.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78. SEV(스위스전기기술자협회) |
| 79. SFDA(중국국가식약감독관리국) | 80. STAS(루마니아국가규격) | 81. TELECOM(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
| 82. TSE(터키규격협회) | 8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84. UCIEE(브라질인증연합) |
| 85. UTE(프랑스전기기술협회) | 86.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87.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 88. BHC(베네수엘라보건기구) | 89. ATP Certificate(브라질보건감독기관) | 90. GOST-K(카자흐스탄표준규격) |
| 91. COFETEL(중국특수장비생산면허) | 92. CPRI(인도전기시험연구기관) | 93. MOH(중국위생부) |

※ 단, CE 마크 DOC는 EU 지침(Directive) 및 EN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3)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 산하 직업안전 보건청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8개 기관이 인증을 받음. (ARL, CSA, CCL, CSL, ERS, ENT, FM, ITSNA/ETL, MET, NSF, NTS, SGSUS, SWRI, TUVAM, TUVPSG, TUV, UL, WL)